

● 제29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69, 2116, 2205]  
**검 토 보 고 서**

2021. 3.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영실 의원, 정지권 의원, 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69, 2116, 2205

### **I. 조례안 개요**

#### **1.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69)**

- 가. 제 출 자 : 이영실 의원 발의 (외 10명)
- 나. 제출일자 : 2020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2. 정지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16)**

- 가. 제 출 자 : 정지권 의원 발의 (찬성 9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01월 27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 **3. 김재형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5)**

- 가. 제 출 자 : 김재형 의원 발의 (찬성 28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02월 0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69)**

- 최근 1인 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가구

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서울의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남.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반려동물 등록대상의 월령을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개월 이상인 개'로 규정하고,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서 유기동물로 구조된 길고양이의 안락사 감소를 위해 구조, 포획, 방사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제10조, 제21조제2항제3항)

## 2. 정지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16)

- 유기동물로 구조된 길고양이의 안락사 감소 개선하기 위해 제안됨.
- 중성화 길고양이 방사 장소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 포획한 길고양이의 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서울시 생활공원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지용 지원을 가능케 하고자 함. (안제21조제2항에서 4항)

## 3. 김재형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5)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미비되어 있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 배설물처리, 맹견의 보험가입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등록대상 동물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맹견의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3항, 제7조의2)

### Ⅲ. 참고사항

#### 1.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69)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2. 정지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16)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3. 김재형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5)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이영실 의원안(의안번호 1969)은 반려동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물의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 및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정지권 의원안(의안번호 2116)은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중성화 이후의 방사 장소를 다변화하고, 도시공원 등에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임.
- 김재형 의원안(의안번호 2205)은 등록대상동물의 목줄 등의 안전조치, 배설물 처리, 맹견의 보험가입 등을 신설하고자 제안된 안임.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이영실 의원안) 동물등록 대상 월령(안 제2조제2호)

- 개정안 제2조제2호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sup>1)</sup>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sup>2)</sup>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 3개월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u>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u> 를 말한다. 2의2. ~ 9.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 2의2. ~ 9. (현행과 같음)

#### 나. (김재형 의원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의 사육·관리(안 제7조)

○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2항3)에서 반려동물과의 외출시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목줄 등의 안전조치, 배설물의 즉시 수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임.

-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의24)에서는 맹견의 소유자 등이 준

- 3)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놓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이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본 개정안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보험 가입 등의 의무규정 이외에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sup>4)</sup>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입법체계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조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 (이영실 의원안) 동물의 구조·보호 (안 제10조)

- 동 개정안은 유기·유실동물 등의 보호 조치를 동물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10일간의 공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양 및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29개의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2020년 6,378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인도·분양·기증 등의 조치 전까지 평균 16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합계 (개소)	운영형태		운영현황		
	직영	위탁	운영인력 (명)	평균보호 기간(일)	운영비용 (백만원)
29	1	28	97	16	1,773

## 〈 서울시 연도별 유기동물 구조·보호 조치내역 〉

(단위 : 마리)

연도	계	구조 실적			조치내역				
		개	고양이	기타	인도/반환	분양/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2020	6,378 (100%)	3,422 (53.6%)	2,658 (41.7%)	298 (4.7%)	1,570 24.6%	2,234 35.0%	1,355 21.2%	996 15.6%	223 (방사21포함) 3.6%
2019	7,515 (100%)	4,533 (60.3%)	2,726 (36.3%)	256 (3.4%)	1,880 25.0%	2,547 33.9%	1,503 20.0%	1,529 20.3%	56 (방사30포함) 0.8%
2018	8,220 (100%)	5,368 (65.3%)	2,607 (31.7%)	245 (3.0%)	2,102 25.6%	2,628 31.8%	1,442 17.5%	2,000 24.3%	48 (방사41포함) 0.8%
2017	8,630 (100%)	5,584 (64.7%)	2,758 (32.0%)	288 (3.3%)	2,114 24.5%	2,638 30.4%	1,605 18.6%	2,234 25.9%	39 (방사37포함) 0.6%
2016	8,645 (100%)	5,872 (67.9%)	2,433 (28.1%)	340 (4.0%)	2,296 26.5%	2,534 29.3%	1,464 17.0%	2,333 27.0%	18 (방사16포함) 0.2%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는 유기동물의 공고 기간을 10일로 하고 이후 분양 기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내 보호하는 동물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음.

### 라. (이영실, 정지권 의원안)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21조)

- 개정안 제21조제2항과 제3항은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이후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
- 서울시에서는 번식력이 강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길고양이 TNR’<sup>5)</sup>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획장소로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심의 재개발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 중성화 이후 포획장소

5) 길고양이 TNR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Neuter) 한 뒤 원래 살던 장소에 방사(Return)하는 방법을 뜻함.



로의 방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길고양이의 안전과 사업수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성화 이후 다른 장소로의 방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개정안 제21조제4항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도시 공원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안임.
- 도시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는 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로 인한 공원 환경 저해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여러 곳에 흩어져 주던 먹이를 일정지역으로 통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되었음.

### 〈 서울시 운영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현황 〉

공 원 명	설 치 일	운 영 단 체	급식소 (개)	총개체 (마리)	중화율 (%)
<b>7개 공원</b>		<b>4개 단체</b>	<b>41</b>		
서울숲공원	2015. 11.	동물자유연대	10	80	91%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2015. 11.	동물권행동 카라	3	18	72%
보라매공원	2015. 11.	한국고양이보호협회	10	86	100%
월드컵공원(하늘공원)	2017. 6.(4개) 2020. 7.(2개)	한국고양이보호협회	6	34	71%
여의도공원	2017. 6.	팅커벨프로젝트	5	20	100%
북서울 꿈의 숲	2018. 8.	동물권행동 카라	5	42	92%
월드컵공원(난지천공원)	2020. 7.	한국고양이보호협회	2	확인중	확인중

- 그러나 급식소의 관리·운영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은 자칫 길고양이 사육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길고양이 증성화 사업의 정책 목표와 배치 될 수 있으므로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점용허가)<sup>6)</sup>에 따르면,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주체인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의 경우 해당법령 시행규칙에서 공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음.

- 시민건강국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원 내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원 관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급식소의 관리 운영은 민간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설치 및 증성화 등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6)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현행	이영실 의원안	정지권 의원안
<p>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생략)</p> <p>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u></p> <p>③ <u>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p> <p>③ <u>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상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u></p> <p>④ <u>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 3 종합의견

- 이영실 의원안(의안번호 1969), 정지권 의원안(의안번호 2116), 김재형 의원안(의안번호 2205)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와 안전조치 등에 내용을 담고 있는 안으로
  - 개정안 제2조와 제7조는 반려동물 등록 월령을 2개월 이상인 개로 규정(이영실 의원안)하고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의 관리 등의 내용(김재형 의원안)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개정안 제10조(이영실 의원안)는 유기동물의 공고 기간을 10일로 하고 이후 분양 기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내 보호하는 동물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개정안 제21조제2항제3항(이영실, 정지권 의원안)는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도심 재개발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 중성화 이후 포획장소로의 방사가 어려울 경우 다른 장소로 방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동물보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됨.
  - 그러나 개정안 제21조제4항(정지권 의원안)는 길고양이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길고양이의 적정개체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목적과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문 의 처

김현정 입법조사관 (02-2180-8155)